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산업통상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1. ~ 10.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3호부터 제8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32호 중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의 육성·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을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및 제3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9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의 육성·보호 및 경쟁력 강화

34의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 조성 및 특화단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9. 방위산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시행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개선

50.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1.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제4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인도통상협력과) ①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둔다.

② 인도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인도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 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도등”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6. 인도등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7. 인도등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8. 인도등 국가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
10.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

· 추진 지원

11. 인도등 국가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2. 인도등 국가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3.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4. 그 밖에 인도등 국가와의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 총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④ 인도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둔다.

②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반도체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및 추

진상황 점검

3. 반도체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및 규제 혁신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관련 위원회·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
5. 반도체 관련 국내외 시장·기술·투자·수출입·공급망 동향 및 통계의 조사·분석
6. 반도체 관련 국내외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지원기관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
7. 반도체 관련 금융·세제 및 예산사업의 기획·조정 지원
8. 반도체 관련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지원
9. 반도체 관련 수출 확대, 해외진출, 외국인투자 유치, 통상현안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안정, 수급 및 위기 대응, 탄소중립·환경규제 대응, 상생협력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
11.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및 전력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별 산업의 육성·지원
12. 반도체 분야 핵심·원천·차세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및 실증 지원
13.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조정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활용 지원

14. 반도체 관련 연구·시험·평가·인증·실증시설 등 산업기반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
 15. 팹리스, 파운드리, 첨단패키징 등 반도체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조성 및 기업 간 연계·협력 지원
 16. 전자부품(전자회로기관,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인쇄전자 산업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8.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조성·육성·운영 및 관련 계획의 수립·승인·이행점검
 19. 반도체 클러스터·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도로·가스·폐수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지원
 20. 지역 반도체산업의 육성, 지역별 특화기반 조성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21.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국산화·내재화·양산 지원 등 기술 자립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지원
 22.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통제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반도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④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보조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812”를 “820”으로, 일반직 계 “802”를 “81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751”을 “759”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조직란 중 “산업정책실”을 “산업성장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성장실 1개 과	6명
---------------	----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산업통상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8조제4항, 제48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3제4항 관련)

1. 한미통상협력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이하	7

2. 인도통상협력과(존속기한: 2028년 9월 30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3.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존속기한: 2029년 9월 30일)

총계	8
일반직 계	8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산업정책실) ① · ② (생략)	제12조(산업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82. (생략)	1. ~ 82. (현행과 같음)
83. <u>방위산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시행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개선</u>	<u><삭 제></u>
84. <u>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u>	<u><삭 제></u>
85. <u>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u>	<u><삭 제></u>
86. ~ 100. (생략)	86. ~ 100. (현행과 같음)
제13조(산업성장실) ① · ② (생략)	제13조(산업성장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31. (생략)	1. ~ 31. (현행과 같음)
32. <u>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관,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u>	<u>32.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의 육성·진흥</u> -- ----- -----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3.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4.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35. ~ 48. (생략)

<신 설>

<신 설>

33.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

3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의 육성·보호 및 경쟁력 강화

34의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 조성 및 특화단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5. ~ 48. (현행과 같음)

49. 방위산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시행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개선

50.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① ~ ④
(생 략)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51.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
제협력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산업통상부령-----.

제48조의2(인도통상협력과) ① 산
업통상부 통상협력국에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
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
과를 둔다.

② 인도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
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
다.

③ 인도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인도, 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도등”이라 한다) 국
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
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장관회
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

영

4.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도등 국가와의 민간경제협
력 지원

7. 인도등 국가에 대한 시장개
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8. 인도등 국가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

10.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 자원
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
사업 발굴·추진 지원

11. 인도등 국가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2. 인도등 국가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3.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기술

<신 설>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 지도·감독

14. 그 밖에 인도등 국가와의 주
요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 총
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
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
과의 협조

④ 인도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반도체혁신성장지원

단) ①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
항제2호에 따라 2029년 9월 30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둔다.

②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단
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의 수립·시행

2. 반도체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의 종합·조
정 및 추진상황 점검

3. 반도체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및 규제 혁신에 관
한 사항

4. 반도체 관련 위원회·협의체
의 구성·운영 및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

5. 반도체 관련 국내외 시장·
기술·투자·수출입·공급망
동향 및 통계의 조사·분석

6. 반도체 관련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교육기관·지원기
관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
원

7. 반도체 관련 금융·세제 및
예산사업의 기획·조정 지원

8. 반도체 관련 인력수급 정책
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활용 지원

9. 반도체 관련 수출 확대, 해외
진출, 외국인투자 유치, 통상현

안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안정, 수급 및 위기 대응, 탄소중립 · 환경규제 대응, 상생협력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

11.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및 전력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별 산업의 육성 · 지원

12. 반도체 분야 핵심 · 원천 · 차세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및 실증 지원

13.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조정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 활용 지원

14. 반도체 관련 연구 · 시험 · 평가 · 인증 · 실증시설 등 산업기반의 구축 · 운영 및 활용 촉진

15. 팹리스, 파운드리, 첨단패키징 등 반도체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조성 및 기업 간 연계 · 협력 지원

16.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인쇄

전자 산업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8.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조성·육성·운영 및 관련 계획의 수립·승인·이행점검

19. 반도체 클러스터·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도로·가스·폐수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지원

20. 지역 반도체산업의 육성, 지역별 특화기반 조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21.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국산화·내재화·양산 지원 등 기술 자립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지원

22.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통제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반도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④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보조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산업통상부 공무원 정원표(제4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12</u>	<u>820</u>	+8
·	·	·	
·	·	·	
일반직 계	<u>802</u>	<u>810</u>	+8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51</u>	<u>759</u>	+8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